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 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3 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 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20120100105

WWW.NAMJAPIZZA.COM

[최초 등록일] 2012. 03 . 19 .

[최종 등록일] 2023. 12 . 04 .

남 자 피 자

[NAMJA PIZZA]

정 보 공 개 서

남자피자[(주)가치엔제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식회사 가치엔제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85, 206 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전화번호] 02-514-2963 [팩스번호] 02-511-296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2-514-2963

NAMJA PIZZA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가치엔 제이	남자피자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 206 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 년 1 월 29 일	2015 년 2 월 12 일	장규석	02-514-2963	02-511-2963
	법인등록번호	110111-5628693	사업자등록번호	114-87-2413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	영업표지	주소		
임원	장규석	남자피자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 206 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장규석	02-514-2963	02-511-2963
임원	김정아	남자피자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 206 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장규석	02-514-2963	02-511-2963
임원	장재만	남자피자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 206 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장규석	02-514-2963	02-511-296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 년 동안 인수·합병 내역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남자피자[NAMJAPIZZA]	
상 호	남자피자 OO점	
상표(서비스표)	  www.namjapizza.com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787,552	612,854	174,697	1,620,127	88,320	130,425
2022년	781,557	903,720	-122,162	1,078,722	-287,572	-296,860
2023년	761,233	1,059,766	-298,533	1,009,110	-143,586	-176,370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장규석	대표	2015년 05월 ~ 현재	대표	업무 총괄
관련임원	김정아	이사	2015년 01월 ~ 현재	이사	업무 관리
관련임원	장재만	이사	2015년 01월 ~ 현재	이사	경영 자문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12.31	2	1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남자피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남자피자 www.namjapizza.com	영업장 내사용	등록일자 2012.08.07	등록 4102372750000	주)남자피자	2033.07.24

	영업장 내사용	등록일자 2013.08.22	등록 4009903080000	주)남자피자	2033.08.22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남자피자]을 시작한 날: 2011년 4월 12일(직영점 시작일)
 2012년 1월 1일(가맹점 시작일)
 2015년 6월 11일(본사 인수일자)

2. [남자피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남자유통	남자피자	김치영	2011.04. ~ 2013.03.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4 3층
(주)남자에프앤비	남자피자	김치영	2013.0.15. ~ 2015.6.1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78길 48 (청담동, 3층)
(주)남자피자	남자피자	장규석	2015.6.11. ~ 2020.12.02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2길 12-2 오피스허브 301호
(주)가치엔제이	남자피자	장규석	2020.12.02~현재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 206호(신월동, 로즈그린타운)

3.

[남자피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남자피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피자	피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7	17	0	14	14	0	13	13	0
서울	9	9	0	8	8	0	8	8	0
부산									
대구									
인천	1	1	0	1	1	0	1	1	0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	7	0	4	4	0	3	3	0
강원				1	1	0	1	1	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 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	2	5	0	1	17
2022	17	1	4	0	1	14
2023	14	0	1	0	0	13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말 가맹점수	전년 가맹점사업자의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 개월미 만 영업제외
		연간 평균		연간평균(상한)		연간평균(하한)		
		연간평균매출 액	면적 3.3 m²당	상한	면적 3.3 m²당	하한	면적 3.3 m²당	
전체	13	208,720	19,805	400,640	43,609	75,431	6,475	
서울	8	218,340	22,983	400,640	43,609	90,365	9,036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 곳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3	해당없음						5 곳미만
강원	1	해당없음						5 곳미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5%~42%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6 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 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2 항·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	1,873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년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 개	0	0	0	
광고	소계	"	-	-	-	
판촉	소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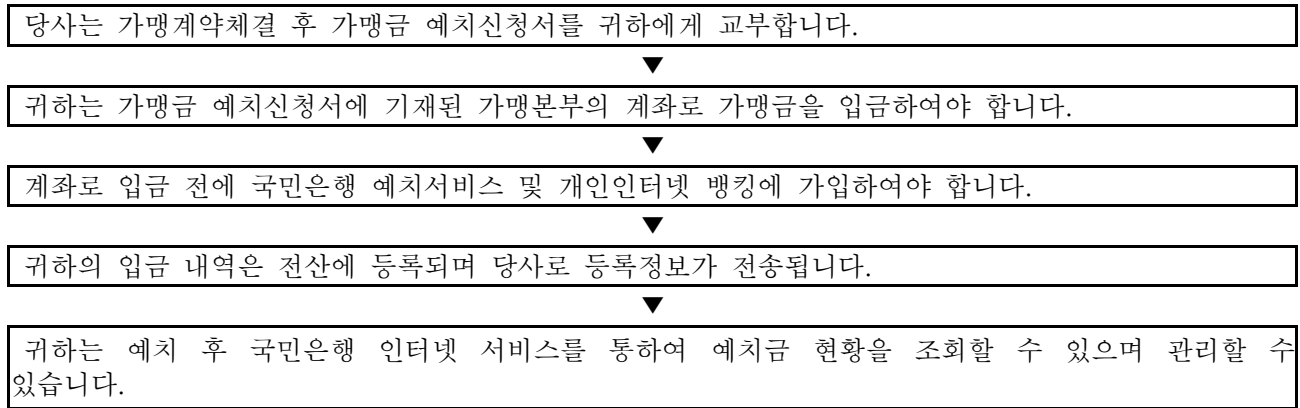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프랜차이즈예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가맹 예치금제도에서 이체	

귀하는 상기 표의 가맹금 예치금액을 당사의 예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계약 후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공제조합에 계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남자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9.5 m²(15 평)기준)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금액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5,500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3,300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44,000	추정 금액
		합계	52,800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①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 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	가맹금 반환 시 영업표지 사용대가는 최초계약기간 전체에 대한 선금금의 성격으로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기타 비용은 소멸성으로 반환되지 않음
최초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개시 전까지 계약해지	교육개시 이후 반환 될 수 없음	숙박비, 교통비는 별도

① 가맹비는 영업표지 사용, 운영매뉴얼 등 제공비로 구성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	----	-------	-----------------	----

보증금	20,000 (보증보험 으로대체)	가맹점개점 이전	원부재료 대금의 미납 등 본 가맹계약 위반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보증보험 가입비용은 가맹점주 부담
-----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의 금액입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 가맹비	5,500	
최초 교육비	3,300	
보증금	20,000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만 예치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합계	28,8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 m²(10 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필수설비 (주방설비/집기 오토바이 2 대 등)	협력 업체	22,000		공사 시작 1 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당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간판 (어닝,기본닥트, 분전반등)	지정업체(공간) 또는 자체시행	6,325		공사 시작 1 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건물구조나 재질에 따라 변동 가능, 당사의 BI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되어야 함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지정업체(공간) 또는 자체시행	15,675	1,567	공사 시작 1 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10 평은 기본 (3.3 m ² 늘어날 때마다 160 만원 추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0		물품 공급 1 일 이전	물품발주 전 계약해지	익월 10 일결제
	합계	44,000	4,400			

[별도공사비용 : 외부간판, 전기증설, 냉난방기, 철거공사, 조경공사, 외부환풍, 가스공사,
오토바이 등은 별도비용입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관리감독비로 [1,100]천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와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해야 개설가능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방설비/집기 상세내역은 별첨합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V.9. 광고 및 판촉 활동”] 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로열티	가맹본부	월 550	익월 10 일	후불로 반환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 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전국광고 지역광고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콜센터 수수료	가맹본부	월 28,5	익월 10 일	후불로 반환 없음	후불로 반환 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회당 200 (숙박비,교통 비 별도)	교육 실시 3 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추정비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일체의 금전지급의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당사의 광고 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당사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받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 [3,300]천원, 계약이행보증금 [20,000]천원 보증보험 계약을 진행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체결을 원할 경우 신규에 준하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당사(보증보험)]을 지급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관련 계약조문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BI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가맹점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 20 조 제 3 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 1 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 18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 1 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38 조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 5 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원, 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한다.	28 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부가세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남자피자 등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 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품용역은 별첨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남자피자 10" 등	11,600	사전 서면 통지	※상품용역명 및 권장가격은 별첨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동일한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전문점	남자피자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m ²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통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42%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이후 재계약(갱신)의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교사진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 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원, 부재료, 상품,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 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7. 영업상 비밀공개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1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7 조 (참조 29 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 14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14 조제 1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 37 조 2 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양당사자 쌍방의 서면 합의	6 조

[당사의 협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 수정계약서(안) 검토 → 승낙여부 서면 통지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결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 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 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해당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귀하가 [남자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스파게티와 피자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남자피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통상 오전 11 시~오후 10 시 (일 9 시간 이상은 영업)	주 6 일 이상(단, 설, 추석명절 제외)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총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공고 후 7 일 까지 가맹점 광고 불참시 사유를 당사에 통지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지역별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총액의 25%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통지 후 7 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광고 시작 →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시 당사는 제시함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관촉 계획 공고 → 공고 후 7 일 까지 가맹점 관촉 불참시 사유를 당사에 통지 → 관촉 시작	월별 관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팸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관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계획과 소재 등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당사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 제 39 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32 조 (보고의무)

② 가맹점사업자는 월(1)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본부에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입력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적발 회수 당 일금 일백만원(W1,000,000)

제 41 조 (손해배상)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금 오십만원(W500,000) X 12 개월(단, 12 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② 아래 내용으로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과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영업금지 의무 위반 시 금 오백만원(W5,000,000) 위약금 지급

2.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무단 사용 시 위반일수 X 금 일십만원(W100,000) 위약금 지급

3.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소스 등 자채가공 등 상품품질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 금 오백만원(W5,000,000) 위약금 지급

③ 기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서 상의 구제수단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66 m²(20 평)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 일)	8,8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 일)	62,42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 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4(5 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합계		9 페이지 이하 참조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	----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	--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관련 계약조문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 2 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조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행사	판촉 행사시	직원 파견	판촉행사 년 1회 당일	0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본사 (02-514-2963)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남자피자]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수시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업 교육	7 일	(1~2 인기준)3,000	오픈전 7 일
수시 교육	4 일	(1 인기준, 1 일, 110)	추정금액

[※수시교육은 개업 이후 교육으로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금액을 사전통지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교육에 필요한 실비수준으로 숙박비, 교통비 등은 별도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불 이수 시 제재	관련 계약조문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될 수 있음	21 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수료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됨	37 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36 조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200-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021, 2022, 2023 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필수설비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합니다.
- ※ 상기의 제품은 가맹사업 준비 중에 있으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 상품/원자재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의 제품은 가맹사업 준비 중에 있으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식자재는 가맹본부에서 일체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합의 후 계약 진행합니다.

[판매 상품용역 리스트]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남자피자 13" /18"	18,800/28,900	치킨텐더 6pcs/10pcs	5,500/8,500
치즈피자 13" /18"	18,800/28,900	버팔로윙 6pcs/10pcs	5,500/8,500
페퍼로니피자 13" /18"	19,900/29,900	쉬림프링 6pcs/10pcs	5,500/8,500
크레이지피자 13" /18"	19,900/29,900	남자 스파게티	6,600
불고기피자 13" /18"	22,900/33,900	토마토 스파게티	6,600
스파이스하와이안 피자 13"/18"	21,900/29,900	남자 리조또	6,600
오리지널피자 13" /18"	22,900/33,900	토마토 리조또	6,600
리얼토마토피자 13"/18"		싱글팩	6,900
베이컨포테이토피자 /13"/18"	22,900/33,900		
스윗포테이토피자 13"/18"	22,900/33,900		

[별첨]

가맹점 리스트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남자피자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식회사남자피자
	성명(대표자)	장 규 석
	주소(사무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112 길 12-2 오피스허브 301 호 (전화:02-514-2963)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사업자번호		국민은행 268801-04-207570 114-87-241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 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남자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

○ (절취선)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남자피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인) 또는 서명